

Corporate Governance Report

2017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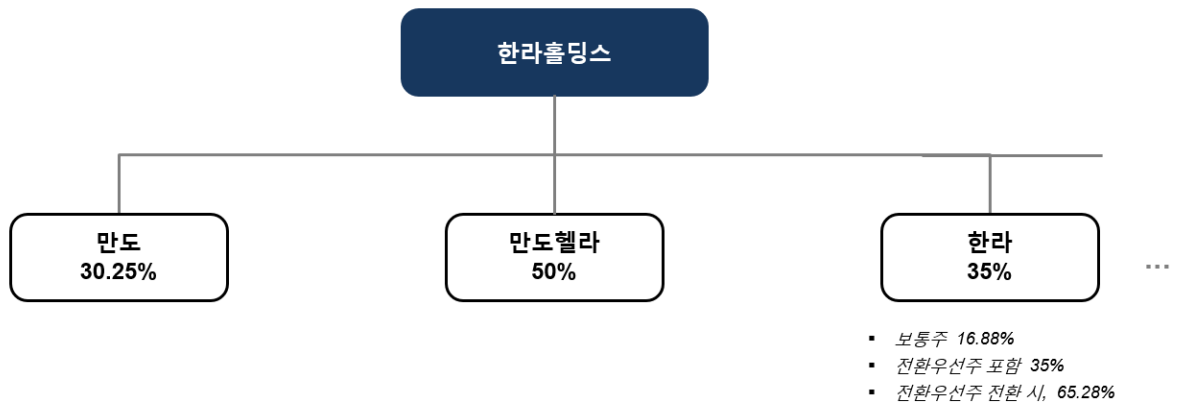
1. 회사 개괄	3
2. 주주	4
(1) 발행주식 및 최대주주	4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4
3. 이사회	4
(1) 구성 및 선임	4
(2) 구성원	5
(3) 운영 및 기능	7
(4) 이사회 內 위원회	7
(5) 평가 및 보상	9
4. 내부감시기구	9
5. 외부감사인	9
6. 기타	10
(1) 이해관계자 소통	10
별첨1. 정관	11
별첨2. 이사회규정	26

1. 회사 개괄

당사는 2014년 9월 1일자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 종속회사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그룹 IT센터를 영업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1일 계열회사인 한라이앤씨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으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 Halla(한라) 및 Mando(만도) 브랜드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수익 수취, 그룹 IT 센터의 IT 제품·용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지주사업과 유통물류서비스 사업부문의 자동차 부품·용품 판매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림1. 회사 지배구조>



2. 주주

(1) 발행주식 및 최대주주

정관 제5조에 따라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정관 제6조에 따라 주식 일주의 액면금액은 5,000원입니다. 당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0,802,691주입니다. 현재 자기주식을 133,603주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10,669,088주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몽원이며, 현재 전체 발행주식 10,802,691주 중 2,525,233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은 23.38%입니다. 그 밖에 국민연금공단이 12.55%, KB 자산운용이 5.3% 보유하고 있으며, 타 주주들의 지분율은 5% 미만입니다.

(2)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운영 중이며,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전에 의안 내용과 함께 소집통지서 발송과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이며,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합니다.

3. 이사회

(1) 구성 및 선임

당사 정관 제29조는 3인 이상의 이사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는 3명입니다. 사외이사는 국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현재 당사 임기영 부회장과 황인용 사장이 각자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2) 구성원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당사의 회장, 부회장 등 주요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1.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성명	출생년월	직위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사내이사	정몽원	1955.08	이사회 의장	2017.03	2020.03
사내이사	임기영	1953.03	(주)한라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2014.09	2020.03
사내이사	황인용	1958.01	(주)한라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2016.03	2019.03
사내이사	이주형	1967.11	(주)한라홀딩스 CFO	2016.03	2019.03
사외이사	최경식	1941.02	감사위원	2014.09	2020.03
사외이사	최완수	1956.04	감사위원	2014.09	2020.03
사외이사	서상훈	1959.05	감사위원	2016.03	2019.03



정몽원 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만도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라그룹 회장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 한라그룹이 당사를 인수한 후, 현대차그룹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등 회사의 외형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기 비전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임기영 대표이사 부회장은 2014년부터 당사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Bankers Trust Company, 살로먼브라더스 증권, 도이치방크, IBK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국내외 투자은행 및 증권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금융분과위원회 한국대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를 맡았습니다.



황인용 대표이사 사장은 주식회사 만도 중앙연구소 소장, 제동사업본부장, 글로벌구매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5년부터 당사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자동차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세계 선도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술력 확보에 큰 기여를 했고, 현재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동차 Aftermarket 및 물류서비스 사업부문의 안정화 및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이사는 1992년 말 주식회사 만도 입사, 글로벌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회계팀장 및 경영관리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재무관리실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 재무관리실장으로서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기획, 전략 및 재무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분야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이사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 및 현대증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에 여러가지 금융기법과 상품을 제안하는 등 당사의 재무구조 선진화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일원으로서 당사 재무활동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완수 이사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특파원, 청와대출입기자, IT부장, 경영기획실장, 증권부장 및 편집위원, 한경TV 보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신문협회 기초협의회 감사 및 엔에프컨소시엄(주)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오랜 언론생활에서 나오는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일원으로서 당사 재무활동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이사는 삼성그룹 비서실 및 삼성자동차에서 기획을 담당했으며, 삼성증권, IBK투자증권에서 기업금융을 총괄했습니다. 주식회사 테이팩스와 동부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감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대경기계기술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기획경험과 기업금융,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에서도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 및 기업 인수합병 관련 조연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 운영 및 기능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실시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됩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합니다.

① 상법 상 이사회 의결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사채의 발행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②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 자회사 자본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
-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③ 기타 법령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상 결의요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4) 이사회 內 위원회

당사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 중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최경식 이사, 최완수 이사, 서상훈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합니다. 또한 필요 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임기영 대표이사)과 사외이사 2명(최경식 이사, 최완수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설치·운영 중이며, 법령 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림2.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표2. 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정몽원		
사내이사	임기영		●
사내이사	황인용		
사내이사	이주형		
사외이사	최경식	●	●
사외이사	최완수	●	●
사외이사	서상훈	●	

(5) 평가 및 보상

당사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임원의 보수는 매년 개인별로 협의를 통해 책정되며,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보수한도 내에서 책정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실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50억원 한도로 보수한도를 승인 득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연봉범위 내에서 임원의 자질과 성과를 종합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4. 내부감시기구

당사는 내부감시기구로서 그룹 내 독립된 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정도경영실은 그룹 내 회사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 관계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조회 및 자료 요구 그리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http://ethics.halla.com/>)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로 구성되며, 정기감사는 연도별 감사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별감사는 경영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도경영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외부감사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당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사실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2017년 2월에 선임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감사 보



수 계약금액은 340백만원 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간 감사일정 계획 및 감사 결과, 용역계약 체결 현황 그리고 회계 및 감사 관련 최근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6. 기타

(1) 이해관계자 소통

당사는 주주, 잠재적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개방적이고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시를 통한 적시·정확한 정보 제공, 투자자와의 1:1 미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 제공 측면에서 당사는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형태로 적시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동등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시공시 또는 공정공시 형태로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대표이사가 공시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공시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담당자는 공시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지정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 아래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는 투자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기별 실적발표를 애널리스트 Conference Call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사 실적에 관심 있는 애널리스트이면 누구든지 Call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이후에는 투자설명회(NDR) 개최 또는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Conference 등에 참여하여 국내외 투자자들과 1:1 미팅 또는 그룹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와의 미팅 시, 연 1회 이상 당사 CEO 또는 CFO가 직접 참여하여 당사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들과 협업하여 투자자 대상 기술 세미나 등의 Investors Forum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라홀딩스라 하며, 영문으로는 Halla Holdings Corporation 으로 표기한 다(이하 "회사"라 한다).

제2조 (목 적)

회사의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교육서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위한 사무지원사업
8. 시스템 개발, 통합(SI) 및 운용(SM) 사업
9.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유통 및 임대업
10. 각종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임대업
11. 스포츠클럽 운영업
12. 운동기구 및 일용잡화 판매업
13. 스포츠 용품 도·소매업
14.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15. 자동차수리, 정비업 및 관련장비 판매업
16. 차량용 연료 판매업
17. 차량관리 대행업
18. 보험대리점업
19. 냉동기 및 공기조절기(장치) 수리, 제조, 재생, 재제조, 판매업
20. 상품연쇄화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21. 건축공사업 및 전문공사업

22. 상품중개업
23.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전대업
24.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25.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수리, 재생, 재제조, 판매업
26. 금속 및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판매업
27. 인터넷 유무선 전화번호 검색, 안내 및 지도정보 서비스업
28. 인터넷 광고 및 광고대행업
29.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30. 국제물류주선업
31. 육상, 해상, 항공 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32. 화물운송대행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33. 화물운송주선업
34. 물류 시설, 장비, 용기의 제작, 임대업 및 관련 서비스업
35. 물류센터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36. 화물포장업
37. 공동 및 복합물류사업
38. 창고업
39. 물류 컨설팅업
40. 건축재료 도,소매업
41.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소매업
42. MRO 도,소매업
43. 통신판매업
44. 농수산 및 축산물의 생산판매업
45. 농수산 및 축산물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46. 사료 및 사료원료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47. 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48.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부품 및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49. 고철 수집, 운송, 가공처리, 도·소매
50. 농기계, 운반기계 기타 관련 상품의 제조, 조립, 수리, 도·소매
51.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2. 종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53. 수출입업 및 대행업
54.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55.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 56.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 57.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터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 58. 토지구획 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 59. 공동주택관리업
- 60. 시설물 유지관리업
- 61. 항만, 철도, 공항, 교량, 터널, 도로, 터미널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 62. 별정통신사업
- 63. 부가통신사업
- 64. 정보통신공사업
- 6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66.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7.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 및 투자

제3조 (사무소의 위치)

- ①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공장, 지점, 연락사무소, 대리점 및 해외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 ①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llaholding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다.
- ② 회사가 법령에 따라 신문에 광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①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만(10,000)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오천(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권)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 ②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③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및 제2항의 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결의로 3월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를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9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3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해 주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사 채

제16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 (주주총회의 종류 및 운용)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③ 주주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 결의의 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찬성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2014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는 회사의 분할 당시 회사의 최대주주인 법인(이하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에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회사가 분할 당시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회사 자기자본의 2.5% 이상(연간)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다만, 분할 신설법인 주식의 매수는 제외됨)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모든 사안에 관하여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명의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그가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각 주주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및 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위원회)

- ①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2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1회, 임시이사회는 어느 이사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 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 운영 및 결의)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상법 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3.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자기주식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4. 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타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인수, 자회사의 설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0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 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 규칙)

이사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사회 규칙에 따른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회사의 계산

제46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외부 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1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매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2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8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36조, 제39조,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9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제 10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1 조 (개정시행일) 본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2. 이사회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4 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부서를 두며 간사부서는 재무팀 된다.

제 5 조 (의장)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 이사회는 어느 이사의 요청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5]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7 조 (성립 및 결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상 결의요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상법상의 이사회 의결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승인
 - 4) 사채의 발행
 - 5)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6) 주식의 양도 승인
 - 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 8)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업무집행
 - 10)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 전입의 승인
 - 11) 중간배당의 승인
 - 12)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 나.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1) 연간사업계획의 승인
 - 2) 최초사업계획의 중대한 수정 또는 변경

- 3) 회사자산에 대한 담보설정
- 4) 자회사 자본불입 및 차입을 위한 보증 승인
- 5) 중요한 기술, 특허 기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
- 6) 자본(금) 증가에 관한 사항
- 7)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상법 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정관의 변경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일부의 양수
- 사후설립
- 이사 해임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주식의 분할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중요한 사항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
-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
- 이익에 의한 주식소각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3)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자사주식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4) 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 이외의 신규 사업에의 진출 (타회사 또는 사업부문의 인수, 자회사의 설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

4.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 8 조 (부의)

1. 이사회 의안은 각 이사가 발의 한다.
2.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각 이사는 상정 의안의 개요를 회의일 [5]영업일 이전에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 본인에게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

제 10 조 (위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관 업무 해당 임직원에게 그 결정과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의사록)

1.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간사부서에서 보관한다.

제 12 조 (간사)

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이사회 간사는 재무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8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9 조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승인한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